

공공심사위원회 운영지침

심사관리실 공공심사부

전부개정 2024. 10. 24. 지침 제433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입원적정성 심사 처리 기준」 제6조제4항에 따라 입원적정성 심사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설치하는 공공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공공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한의사협회가 추천하는 임상 전문가 3명
2. 대한병원협회가 추천하는 임상 전문가 3명
3. 대한한 의사협회가 추천하는 임상 전문가 1명
4. 의학 관련 학회가 추천하는 임상 전문가 2명
5. 심사평가원의 상근심사위원 및 입원적정성심사전문위원 10명
6. 심사평가원의 자동차보험심사위원 2명

제3조(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① 위원 임명 또는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사전진단 결과 위원으로서 직무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신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최초로 개최되는 회의 개시 전까지 원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윤리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의 청렴 의무) ① 위원은 위원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은 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연구용역·공사·계약 등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은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동산·주식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은 위원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적인 연구 등에 활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위원은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편의·향응·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알선·청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보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제2조제2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임·해촉) 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2. 제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 의하여 교체 추천된 때
3. 제4조에 따른 위원의 청렴 의무를 위반한 것이 확인된 때
4.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원장이 판단하는 때

제7조(위원회의 위원장)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제2조제2항제5호의 위원 중에서 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회의는 월 1회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회의 개최 일정, 안건 수 등을 고려하여 회의 개최일을 추가, 변경 등 조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입원적정성 심사와 관련하여 논의가 필요한 사항

2.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그 밖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서면심의서를 문서(전자 또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위원 전원에게 송부하고 미리 지정한 회신기간 내에 재적위원 과반수의 회신과 회신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서면의결을 할 수 있다.

⑤ 제2조제2항제6호의 위원은 자동차보험심사와 관련한 안건이 있을 때에만 참석하며, 자동차보험심사와 관련이 없는 안건의 회의의 재적위원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당사자와 권리·의무자인 때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때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요양기관에 소속되어 있거나 근무하는 때

4.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②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위원장에게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심의·의결에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때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④ 위원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제척·기피·회피 신청(확인)서를 회의 개시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해당 위원이 공정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해당 위원을 당해 심의·의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회의의 심의·의결에서 제외된 위원은 회의의 의사정족수에 포함하나, 의결정족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 처리 등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직제규정 시행세칙」 제10조에 따라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내 소속 부의 장(직무대리인 등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다만, 간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무대행자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회의록의 작성·보관) 간사는 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를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심사평가원의 직원(직제 외 상시 근로하는 자를 포함한다)으로서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때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3조(보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칙<지침 제433호, 2024. 10. 24.>

이 지침은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연번	진단 내용	체크사항	
1	공공심사위원회의 기능과 직접 관련된 업체를 경영하거나 근무하고 있다.	예 ()	아니오 ()
2	공공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상사업 관련지역에 부동산 또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예 ()	아니오 ()
3	공공심사위원회의 직접적인 심의 대상이 되는 인가·허가·면허·특허 등의 당사자이다.	예 ()	아니오 ()
4	공공심사위원회 기능과 직접 관련된 공사·용역·계약 또는 연구·논문 등을 진행 중이거나 진행할 예정이다.	예 ()	아니오 ()
5	공공심사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소송 등을 진행 중이다.	예 ()	아니오 ()
6	공공심사위원회 직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기관, 단체, 타 위원회에서 현재 활동 중이다.	예 ()	아니오 ()
7	공공심사위원회 기능 관련 정보나 심의·의결 결과가 본인의 권리·의무 관계 변동, 재산상의 이익 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예 ()	아니오 ()

※ '예'라고 답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심사위원회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 년 월 일

확 인 자

(서명)

윤리서약서

직위: 공공심사위원회 위원

성명:

상기 본인은 공공심사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 해임·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1. 공공심사위원회 직무 수행 과정에서 공정 및 정치적 중립성 준수
2. 공공심사위원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
3. 공공심사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연구용역·공사·계약 등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4. 공공심사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동산·주식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5. 공공심사위원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적인 연구 등에 활용하는 행위 금지
6. 공공심사위원회 직무 수행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 본인이 속한 단체 및 기관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심의가 발생할 경우 회피
7. 공공심사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해당 사업체 취업 행위 금지
8. 공공심사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편의·향응·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알선·청탁 행위 금지
9. 기타 공공심사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반하는 행위 금지

20 년 월 일

확 인 자

(서명)

서면심의서

「공공심사위원회 운영지침」 제8조 제4항에 따라 아래 안건을 서면으로 심의합니다.

1. 회의명: 20 년도 제 차 공공심사위원회
2. 안건명:
3. 안건별 심의 의견

자문 결과			심의 의견		
연번	대상자	입원일수 불인정률 (단위: %)	동의 여부		제시 의견
			찬성	반대	

※ “동의 여부” 란은 대상자 전체 차수(입원)에 대한 자문 결과에 모두 동의하는 경우 “찬성” 란에, 그 이외에는 “반대” 란에 “○” 표시합니다.(“반대”인 경우에는 반드시 “제시 의견” 란에 해당 대상자 및 차수와 사유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상정 안건에 대하여 위와 같이 심의합니다.

20 년 월 일

공공심사위원회 위원

(서명)

공공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제척 · 기피 · 회피 신청(확인)서

본인은 20 년도 제 차 공공심사위원회 심의안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제척 · 기피 · 회피 사유가 있기에 신청(확인)서를 제출합니다.

구분	신청(확인) 사유	비고
제척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당사자와 권리 · 의무자인 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때	
	위원이 해당 안건의 요양기관에 소속되어 있거나 근무하는 때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기피	위원의 공정한 심의 ·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때	
회피	위원이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심의 · 의결에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위원 스스로 판단하는 때	
세부 내용		

※ 제척, 기피, 회피 사유가 있는 경우 비고란에 "○" 표시(중복표시 가능)하고, "세부 내용"란에 제척 · 기피 · 회피 관련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확 인 자)

(서명)